

# 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| 209,765,504 | 6,292,965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| 198,897,332 | 5,966,920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| 10,868,172  | 326,045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| 10,868,172  | 326,045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| 538,168     | 16,145    |
|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      | 614,101     | 18,423    |
| 기반시설 특별회계         | 12,593      | 378      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416,839     | 12,505    |
| 주차장특별회계           | 9,284,619   | 278,539   |
|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       | 1,852       | 56  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283,34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